

청산인 취임등기를 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청산인이 등기를  
제출할 경우 동법 제119조 제3항 제1항에 근거하여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만약 귀 조합에서 동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 시 송 달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 제1항 제4호의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를 송부하기 위하여 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중 소 기 업 청 장

### 1. 공시송달 대상 사회적협동조합

조합명	이사장	설립인가일	소재지	우편물 반송사유
재창업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김근영	2013.10.17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22 태양빌딩 604호	수취인 불명

### 2. 통지문 명칭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통보

### 3. 통지문 내용

가. 우리 청은 귀 조합이 설립인가 과정에서 ‘협동조합기본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두 차례의 청문 개최 등을 통해 사실 관계 확인 및 법률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위서류 제출 및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2~4차 창립총회 개최가 확인되어 동법 제1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귀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에 따라, 귀 조합은 동법 제10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해산되는바, 동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